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가. 제안이유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 신설(안 제34조의2)
-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안 제8조제3항제4호 용어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원”)
- 근거규정이 폐지된 별지 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
- 안 제34조의2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그밖에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근거 규정이 폐지된 별지 서식을 삭제함.

○ 검토 결과

- 2016년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이 “환경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22년 청소 노동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였음. 이에 맞춰 본 조례안에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또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인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72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 신설(안 제34조의2)

나. 「환경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직명 변경

(안 제8조제3항제4호 용어변경: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원”)

다. 근거규정이 폐지된 별지 서식 삭제

(현행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0. ~ 5. 10.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보상금의 지급)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범위·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마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p> <p>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u>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u></p> <p>5. ~ 7. (생 략)</p> <p>④ (생 략)</p> <p><u><신 설></u></p> | <p>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환경공무원</u> -----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34조의2(보상금의 지급)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범위·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u></p> |